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제6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04-3058
판결 일자	2005.07.20	판결 결과	전부 기각
원고 (피항소인)	미드-미시간 컴퓨터 시스템스 (Mid-Michigan Computer Systems, Inc.)		
피고 (항소인)	마크 글라스맨 (Marc Glassman, Inc.)		
참조 법령	오하이오 통일영업비밀법 <sup>1)</sup> Ohio Rev.Code § 1333.63(A), (B)		
참조 판례	Gregory v. Shelby County, 220 F.3d 433, 443 (6th Cir.2000); Farber v. Massillon Bd. of Educ., 917 F.2d 1391, 1395 (6th Cir.1990)		
영업비밀	약국 고객관리 프로그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보상적 손해배상액, 징벌적 손해배상액, 감액 신청		

## 02 사건 개요

원고는 약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싱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고객들의 처방전과 비용 청구 기록 등을 저장,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소스코드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스코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소스코드는 제3자에게 임치(escrow)하되 원고의 경영진이 사망하거나 원고가 파산한 경우 등 특정 비상시에 피고가 소스코드에 접근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스코드에 접근할 경우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약국 1개당 5만 달러의 배상을 하기로 하였다.

1) 원문 <http://codes.ohio.gov/orc/1333.61>

---

피고는 2000년이 다가오자 피고의 약국 40개에 존재하던 개별 시스템을 네트워크 연결 가능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타 사가 판매하던 'TechRX'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원고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 등을 'TechRX'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환해야 하는데, 원고는 변환 작업을 33만 달러에 제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0만 달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6만3천 달러에 변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편지를 보내 소스코드약정 위반을 통지하면서 약정에 따라 21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자회사를 상대로 소스코드약정 위반,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부정취득, 불공정경쟁의 소를 제기하였다.

---

지방법원은 금고에 보관된 자료를 물리적으로 획득하는 것 외에 역설계 등을 통해 소스코드를 얻는 것은 소스코드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스코드약정 위반의 소는 각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소들에 대한 본안 심리에서, 피고의 전 종업원은 피고가 TechRX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숨겼고, 원고가 Y2K 문제 대비 테스트용으로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컴퓨터를 피고가 피고의 자회사에 이전한 후 원고에게 분실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피고의 자회사에 이전된 원고의 소프트웨어는 TechRX로 데이터를 이전시키기 위한 변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 부정취득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자회사가 만든 변환 프로그램을 자체 조사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을 총 80건 가량 발견했다고 하였다.

---

배심원들은 원고의 모든 소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고, 피고에게 2백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 5백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손해액 감액 신청(motion for remittitur)<sup>2)</sup>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거절하였고, 다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정 위반의 소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28만 달러의 감액은 승인했다.

---

본 사건은 피고가 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소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방법원의 감액 신청 거절 결정에 대하여 항소한 사건이다.

---

2) 미국 소송법상 배심원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을 판사에게 감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피고는 소스코드약정에 따라 예정된 손해배상액에 근거하여 2백만 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가 입은 손해와 비교했을 때 보상적 손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명백히 과중한 금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감액 신청을 거절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프로그램 변환 작업에서 원고가 얻지 못한 33만 달러가 최대치이다.

### 04 판결 요지

본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감액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이 거절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유일한 쟁점이다. 지방법원이 재량권 내에서 손해 감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승소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살핀 결과 배심원 평결의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과중하거나 걱정(passion), 편견(bias), 선입견(prejudice)에 기한 것이거나 법적 양심에 충격을 가할 수준으로 과중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이다.

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소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고의 상실 이익(lost profits)이나 피고의 부당이득(illicit gains)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경쟁 제품 판매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 및 생산 자원 절약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로열티가 적절한 손해액 책정 수단이다. 지방법원은 배심원들에게 상실 이익이나 부당이득이 충분한 보상으로 부적절하다면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해도 된다고 지시했고, 배심원들은 합리적인 로열티를 선택하여 2백만 달러를 책정하였다.

피고의 전 종업원의 진술과 피고가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Y2K 대비용으로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역설계를 하였으며, 원고의 증언에 따르면 역설계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것이라는 추정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한다. 소스코드약정이 라이선스약정은 아니고 지방법원은 소스코드약정 위반의 소는 기각하여 본 사건에서는 쟁점이 아니기는 하나, 배심원들이 책정한 보상적 손해배상액을 정당화시키며, 명백히 과중하거나 양심에 충격을 가하는 액수가 아니었으므로 지방법원이 손해액 감액 신청을 거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보상적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오하이오법상 명백히 과중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과중하지 않다. 지방법원은 손해액 감액 신청을 거절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을 유지한다.

---

## 05 Key Point

---

배심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기준으로 볼 때 명백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감액되지 않으며, 배심원들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 정확하다거나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므로 배심원 평결 시 주의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되므로,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